

## 예산총칙

제1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8,656,107,556 | 259,683,227 |
| 일반회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7,168,613,005 | 215,058,390 |
| 특별회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1,487,494,551 | 44,624,837  |
| 공 기 업 특 별 회 계 |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  | 362,331,198   | 10,869,936  |
|               | ① 상 수 도 사 업         | 147,361,633   | 4,420,849   |
|               | ② 하 수 도 사 업         | 214,969,565   | 6,449,087   |
|               | 기 타 특 별 회 계         | 1,125,163,353 | 33,754,901  |
|               | ① 의 료 급 여 기 금       | 422,995,749   | 12,689,872  |
|               | ② 수 질 개 선           | 2,747,597     | 82,428      |
|               | ③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      | 258,707       | 7,761       |
|               | ④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 | 358,178       | 10,745      |
|               | ⑤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 | 4,465,941     | 133,978     |
|               | ⑥ 택 지 개 발 사 업       | 204,374       | 6,131       |
|               | ⑦ 교 통 사 업           | 28,416,596    | 852,498     |
|               | ⑧ 광 역 교 통 시 설       | 18,244,387    | 547,332     |
|               | ⑨ 학 교 용 지 부 담 금     | 10,983,325    | 329,500     |
|               | ⑩ 산 업 단 지           | 3,701,026     | 111,031     |
|               | ⑪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  | 90,130,177    | 2,703,905   |
|               | ⑫ 도 시 철 도 사 업       | 321,532,271   | 9,645,968   |
|               | ⑬ 소 방               | 221,125,025   | 6,633,751   |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“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”와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“해당 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“8,028,635천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“773,000,000천원(고금리지방채차환 370,300,000천원 포함)”으로 한다.

제8조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